

광주청년미래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서

광주광역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청년미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족돌봄 등 위기 청(소)년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3년간)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정책 변경으로 사업의 조정, 변경,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정책 지침에 따르며,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위탁운영협약(‘24.12.24.)은 본 위탁사업 협약으로 그 내용을 변경, 승계한다.

제3조 (위탁시설 및 업무) ① “위탁자”는 가족돌봄 등 위기 청(소)년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사회복귀 등 복지증진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아래의 시설 일부를 위탁운영 한다.

1. 시설명 : 광주광역시 청년미래센터
2.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1-6, 4층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참여자 발굴 및 발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초기상담, 접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시행
 4. 지원사업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및 사례관리
 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계서비스 자원관리
 6.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유지 지원 등 참여자 사후관리
 7. 그 밖에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③ “수탁자”는 센터 위탁관리 재산목록을 관리해야 하며, 매년 정산보고 시 “위탁자”에게 변동사항을 보고한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재위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위탁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시설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시설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있어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법”, “조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 및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망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운영에 필요한 비품, 장비 등의 매입 또는 기증 등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의 종료 또는 협약이 중도에 해지된 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위탁재산과 제2조에 따른 위탁기간 중 취득한 재산 일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인계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사업운영 대상) “수탁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상범위는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제7조 (운영)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 등에 대한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운영비 지원) ① “위탁자”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지급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매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보고 및 자료제출) “위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각종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등) “수탁자”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적, 사업 기간, 사업대상, 연간예산서 등 연간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센터” 운영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위탁자”가 위탁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때

③ 위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해지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위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한 해지의 경우 협약의 해지 사유 발생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 제2항 제5호에 의한 해지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종사자 채용) ① “수탁자”는 종사자 채용시 “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하며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수탁자”가 채용·임명하되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한계) “수탁자”는 “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협약내용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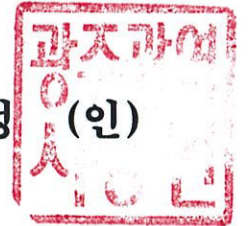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협약서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6월 25일

위탁자 광 주 광 역 시 장 강 기 정 (인)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수탁자 광 주 광 역 시 사 회 서 비 스 원 장 김 대 삼 (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2층(화정동)

